

School Environments that Respects Universal Human Rights for All and Educations on the Right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Jeong-Ah Ku(Daejeon University)
Jiyoung Son[†] (Daejeon University)

<Abstract>

In the educational field, students with disabilities have the right to receive the education that any student has. Currently,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making continuous efforts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However, several limitations have emerged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draw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support for human rights by explor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Through this, a strategy for creating a school environment that respects human rights for all and an education plan for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ere derived. As a result, it was suggested to create a school environment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in order to create a school culture that respects human rights and to create an environment to prevent violations of the right not to be discriminated against. In addition, for education to respect human rights for all, it was proposed to create a positive atmosphere that respects and considers the diversity of individual members of the school, and based on this, a plan for understanding and respecting disabilities can be taught together.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in presenting policies related to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future.

Keywords : human rights, disabilities, school, educations on the rights

[†] Correspondence : Jiyoung Son, Daejeon University, sonjy@dju.kr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인권존중 학교환경 조성 및 장애인권 교육 방안*

구 정 아(대전대학교, 교수)
손 지 영†(대전대학교, 교수)

[요약]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 인권은 학생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 여러 한계점들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학생 인권지원의 국내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장애학생 인권지원을 위한 교육적 지원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모두를 위한 인권존중 학교환경 조성 및 장애인권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인권침해 예방 학교환경 조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인권존중 교육을 위해 학교 구성원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향후 장애인권 관련 정책들을 제시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인권, 장애, 학교, 인권교육

I. 서론

† 이 연구는 2018년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지역사회와 연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 방안' 연구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였음

† † 교신저자: 손지영, 대전대학교, sonjy@dju.kr

■ 투고일: 2022. 07. 30, 수정본 접수일: 2022. 08. 24, 게재 승인일: 2022. 08. 26

인권은 어떤 능력이나 자격을 의미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인권은 삶의 어떤 특정 분야에 국한된 제한적 의미가 아니라 누구나 삶의 전반에서 기본적으로 인식되고 지켜져야 하는 보편적 의미를 지닌다(국립특수교육원, 2014; 정명선, 이경준, 2012). 즉, 인권은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이고, 장애인의 인권 역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 인권은 학생이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는 것이고, 장애학생이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며 장애학생이 일반 학생과 함께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손지영, 김향중, 2019). 국가인권위원회(2014)의 연구에서는 장애학생의 인권을 교육기본권과 차별 받지 않을 권리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장애학생의 교육기본권은 학습권, 자유권적 측면, 사회권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학부모가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 청구권을 포함하기도 한다(국립특수교육원, 2014). 즉, 교육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 요건이고, 장애학생 능력의 계발과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권리이다. 장애학생은 장애로 인해 기회, 과정 및 결과 등 모든 교육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로 인해 자아실현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한받으므로, 이러한 교육 기회, 과정 및 결과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손지영, 김향중, 20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2008년 5월 26일에 시행되었으며, 제1조(목적)에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동 법의 주요 내용은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연한 확대(제3조), 차별의 금지(제4조), 장애의 조기 발견 체제 구축(제14조), 장애영아 무상교육 실시(제18조),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제11조), 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제시(제21조), 학급 설치 및 교사 배치 기준의 상향 조정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제27조), 특수교육관련서비스의 강화(제28조),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강화(제29조-제34조) 등이다.

이 법에서는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교육기회와 교육활동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학생이 학령기부터 대학의 고등교육까지 교육에 있어서 입학거부, 활동 참여 배제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의 차별, 대학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지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 제공, 통학지원, 기숙사 설치운영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법 시행으로 인해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것과 장애학생의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했다는 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의 목적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법 제1조)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차별 행위를 ‘장애를 사유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합리하게 대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또한 차별행위에 따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의 범주를 구체화 하고 장애인의 의사결정권 보장, 유기·학대·폭력·괴롭힘 등 금지 및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상황에서 장애학생이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도구적 성격을 지닌 법률이기도 하다.

교육부에서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방안을 2011년부터 마련하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으나, 최근 특수학교에서의 장애학생 폭행 사건과 같은 잇따른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여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대두되었다(손지영, 김향중, 2019). 이를 계기로 2018년 12월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교육부에서 발표하였다. 교육부의 인권보호 종합대책에서는 장애학생 인권침해 대응체제 강화를 위해 장애학생 성폭력,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을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교육부, 2018). 그리고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체제 강화를 위해서 범정부 유관기관(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병무청, 경찰청, 장애인단체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장애학생 인권보호 정책 및 지원 방안 협의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교육부, 2018).

국가인권위원회(2014)의 연구에서는 일반학생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권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일반학생의 인권 감수성 제고 및 통합교육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관련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및 확대, 인권 실천 활동 기회 확대를 제안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4). 일반학생들의 장애동료 이해 및 인식개선을 통한 인권침해 방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김요섭, 2015). 이것은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인성교육 진흥법에 따라 학교에서 인성교육의 의무적 실천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손지영, 김향중, 2019). 일반학생이 장애인 인권봉사 동아리 활동 혹은 특수학급 방과 후 활동 공동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특수학교 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다면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태도가 향상될 뿐 아니라 일반학생 스스로의 인성함

양에도 기여할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4). 아울러 이러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반학생 스스로가 인권침해 가해자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혹시 동료가 인권침해를 당할 시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신고를 통한 문제 해결자로 나선다면 인권을 존중하는 통합교육 현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김양화, 김남순, 2013).

본 연구에서는 장애학생 인권지원의 국내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장애학생 인권지원을 위한 교육적 지원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모두를 위한 인권존중 학교 환경 조성 및 장애인권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II. 장애학생 인권지원의 국내외 사례


1. 국내 사례

장애학생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크게 학교 내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동아리 활동이나 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비장애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 생각하고 이러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다양한 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실제로 인권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각 학교급별로 인권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특히 장애인권 동아리의 경우,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교과활동이나 방과후 활동 시 제시되는 인권교육이나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장애이해교육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을 버리고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표 1> 장애인권동아리 활동의 예

장애인권 퀴즈 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인권에 대한 게시물을 일주일간 도서실에 게시한 후 퀴즈를 응모하고 추천하여 장애인관련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쿠키를 선물로 증정 ▪ 장애인권동아리 학생들이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게시물에 대해 설명하고 퀴즈 대회 참여를 학생들에게 권유함 ▪ 저학년 학생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인권에 대한 개념을 고학년 인권동아리 학생들이 설명해 줌으로써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도함 ▪ 저학년 학생들도 인권동아리 학생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나의 인권도
---------------	--

	<p>친구의 인권도 모든 사람의 인권은 모두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기회를 가짐</p>  <p>*출처: 대전대문초등학교 제공</p>
<p>장애인권 핀버튼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날 주간 행사에서 전교생이 장애인권에 대한 영상물 시청 후 미술시간을 활용하여 인권 핀버튼을 만들 ▪ 핀버튼 그림 그리기 후 핀버튼을 만드는 활동은 인권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작업함 ▪ 핀버튼을 전교생 가방에 일정기간 동안 착용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에 대해 알리는 효과를 얻음  <p>*출처: 대전대문초등학교 제공</p>

출처: 대전대문초등학교.

둘째, 통합학급 교과교육 중 인권과 관련된 단원을 미리 선정하여 특수교사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 수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부족한 장애인 편의 시설과 장애인들이 차별받는 여러 상황을 알아보고 캠페인을 통해 이를 해결해 보도록 할 수도 있다. 다음은 교과와 연계한 인권교육을 위한 수업지도안 예시이다.

<표 2> 교과 연계 인권교육의 예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인권존중 학교환경 조성 및 장애인권 교육 방안

교과	사회	지도 일시	월 일	교시	대상	4학년	지도 교사	
단원	3.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			차시	13/15	교과 서	사회 128-131쪽	
학습 목표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							
학습 주제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알아보기							

학습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문제 상황 파악	동기 유발 학습 문제 파악 학습 활동 안내	○ 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이 주변의 도움 없이 살기 좋은 환경일까요? ○ 학습 문제 확인하기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 </div> ○ 학습 활동 안내하기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활동1>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알아보기 <활동2> 장애인 편견과 차별 금지 캠페인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에게 불편한 환경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5'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동영상
문제 원인 확인	어려움 알기	<활동1>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그 외에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 장애인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가 있어서 직업을 얻기 힘듭니다./ 화장실이 많지 않고 휠체어를 타고 계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놀림을 받습니다. • 속상할 것입니다./ 불편할 것 같습니다./밖에 다니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장애인 화장실을 건물마다 만듭니다./경 	10'	파워포인트 자료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취직 어려움, 친구가 없는 장애인 학생) ※ 내가 장애인이 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상상해서 이야기 하기

		○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 알기 ▪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에서 하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로를 만듭니다/ 장애 이해 교육을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법을 만듭니다.		
정보 수집 및 해결 대안 제시		<활동2> 장애인 편견과 차별 금지 캠페인 ▪ 다른 사람들에게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알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장애인 편견과 차별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하려면 어떤 주장을 해야 할까요? ▪ 나의 주장을 캠페인 종이에 써 봅시다. ▪ 캠페인 활동을 해 봅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해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듭니다. • 장애인 차별 금지 • 우리는 모두 친구입니다. •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배려합니다. 	10'	
문제 해결 및 정리	학습 내용 정리	○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 알아보기 ▪ 장애인 인권이란 무엇인가요? ▪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등에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채널 e>인권 관련 동영상

출처: 대전대문초등학교.

셋째, 장애학생을 위한 인권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례로 지역 내 인권관련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체험활동을 하거나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인권교육(예: 인권감수성교육, 장애인식교육, 성인권교육)을 제공받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한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인권존중 학교환경 조성 및 장애인권 교육 방안

편 인권교육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지역사회 내 어떠한 기관에서 어떠한 지원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지역사회 내 인권과 관련한 기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서울시 마포구 AAC Zone 사례(<표 3>)는 장애학생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고자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이나 상점이나 마트 등에서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한 사례이다. 이러한 시도는 장애학생으로 하여금 지역사회 내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장애인이나 장애학생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계속 진행 중으로 지역사회 내 AAC Zone에 동참하는 기관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표 3> 서울시 마포구 AAC Zone 사례

사업명	서울시 마포구 AAC Zone
목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치료센터 ‘사람과 소통’이 지역사회 내 장애인 의사소통 개선 사업을 함께 해보고자 성산1동주민센터에 제안을 하면서 시작됨 ▪ 그림이나 글자로 된 의사소통판을 제작해 이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식당, 편의점, 카페 등에서 활용할 만한 표현들을 그림이나 글자로 된 의사소통판을 제작하여 설치함 ▪ 이러한 의사소통판이 설치된 기관 출입문에는 AAC(보완대체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안내 스티커가 붙여져 있음 ▪ 장애인들은 의사소통판을 손으로 가리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주민센터에서 민원업무, 도서관에서 도서대출과 반납업무 등을 볼 수 있게 됨
대상	장애인 당사자, 지역사회 내 기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QR 코드를 이용하여 의사소통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 원하는 표현을 클릭하면 음성이 지원됨 ▪ 성산1동주민센터, 지역에 있는 도서관, 지구대, 음식점, 편의점 등 10곳 이상에서 AAC 존을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음
주관기관	마포구, 언어치료AAC센터 사람과소통
출처	http://news1.kr/articles/article_print.php?article_id=3397385

2. 국외 사례

1) 프랑스 사례¹⁾

유럽의 인권교육 정책은 ‘학교에서의 인권 수업 및 학습’에 관한 유럽이사회 각료 위원회 권고 R(85)7에 정의되어 있다. 이 권고에 따르면 인권교육이 필요한 주된 이유는 유럽사회 곳곳에서 배척(intolerance), 폭력 행위 및 테러가 자행되고, 성·인종·종교·문화·장애 등 다양성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태에 맞서 민주 가치를 지지한다는 데에 있다. 인권교육이 이와 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권고에서는 모든 청소년이 ‘학교 교과목을 통해’ 인권에 대해 모든 단계의 교육에서 학습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인권은 사회, 정치 교육의 일부이며, 문화 간, 국가 간 이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권고에서는 청소년들이 인권교육을 통해 비폭력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청소년들은 ‘인권, 임무, 의무, 책임의 주요 범주들’에 대해 학습하고, ‘정의, 평등, 자유, 평화, 존엄성, 권리, 민주주의의 개념들’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 권고의 중요한 또 다른 측면으로, 학교는 인권 존중 및 개인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유럽이사회 각료 위원회는 권고의 한 영역을 ‘학교 분위기(climate of the school)’라는 주제에 모두 할애하고 있다. 인권교육은 실제 학교에서 표현의 자유가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지 않거나, 공정과 정의로움이 지켜지지 않는 학교라면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 인권은 학습과 함께 경험을 통해 체득되어야 한다. 유럽국가 중에서 프랑스가 펼치고 있는 정책과 관련 법규,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프랑스의 장애학생을 위한 인권 보호 법률은 2005년 개정된 ‘장애인의 기회·권리·참여·시민권 평등법(La loi n°2005-102 pour l'égalité des droits et des chances, la participation et la citoyenneté des personnes handicapées,)'으로 ‘모든 장애학생들의 기본 교과과정, 교외 활동, 방과 후 활동 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를 환경 내에서 갖게 되는 모든 활동상의 한계, 사회생활 참여의 제한을 초래하거나 여러 신체적, 감각적, 인지적, 인식적, 정신적 기능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혹은 영구적인 변형 및 손상, 다중장애, 건강기능 장애로 규정된 것이다. 또한 이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포용적 사회(société inclusive)의 철학적 배경과 인권 보장을 반영하고 있다. 법 내용 안에 포용(inclusion)이라는 단어가 직접 사용

1) 프랑스 사례는 아래의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출처로 작성하였음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180723162145565901>,

https://www.ildaro.com/sub_read.html?uid=6394

되진 않지만, 어떤 성질의 결핍, 나이와 삶의 현대에 관계없는 보편적 장애인 권리보장, 장애로 인한 결과에 대한 개별화된 보상, 개인의 선택에 의한 삶의 계획에 따른 지원을 강조하는 등 포용의 가치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은 과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장애를 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데서 점차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이 진화 확대되면서 보다 통합적이고 일치된 정의를 담고 있다. 이 법률은 프랑스 장애인 전달체계 바꾼 하나의 법이 되었다. 프랑스에서 '시민의 권리와 기회균등'의 정신은 장애인도 시민으로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더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나 사회가 장애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건, 시혜적인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누릴 당연한 권리로 모두 인식하고 있다.

프랑스 인권 옹호 활동 방향은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100개가 설치되어 주민들 가까이 밀착하여 장애인들의 현황과 기관이 역할과 기능을 심분 알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 어려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 알려서 인식 개선을 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으로 한정 짓기보다는 인간 중심의 복지, 즉 보편적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의 인권 옹호 및 증진을 꾀하고 있다.

프랑스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시사하는 바는 인권에 대한 인식의 확장 필요성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 사회에 스며있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시각은 기본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인권 존중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기초하고 있다. 비록 장애뿐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인종, 종교, 국적, 다문화 등)을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것이 나중에 사회에서까지의 인권 존중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나를 이해하기, 남을 이해하기, 서로의 차이 인정하기, 서로 칭찬하기, 학급회의의 활성화, 의견 이야기하기, 남의 의견 경청하기 등 실천 가능한 인권 교육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함으로써 자존감을 키우고 서로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지원 자체가 철저히 개인별로 지닌 특성에 따라 특별한 요구에 맞추어져 있다. 즉, 일방적인 표준 지원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거기에 맞춘 종합 시스템을 그때그때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재정적 확대가 담보되어야 하나 장애인들 진정한 의미의 지원이 실제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별 맞춤형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 미국의 사례

미국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이하 ADA)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금지하기 위해 국가적 법률을 규정하고 그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 관련하여 ADA는 장애학생이 적절한 무상의 공교육(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차별금지, 의사소통이나 프로그램의 접근성, 고용 등과 관련해서는 교육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과 관련하여 공공시설의 차별의 정의는 활동의 참여, 통합된 환경, 참여의 기회, 운영상의 방법, 협력과 관련하여 차별의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다.

재활법(Rehabilitation Act)의 Section 504는 ‘어떠한 장애인이라도 단지 장애를 이유로 연방 기금을 받는 여타 프로그램이나 활동으로부터 참여를 배제당하거나, 수혜를 거부당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4). 차별로부터 보호되는 내용은 관련 서비스의 제공, 활동에의 참여 및 접근권 등이며, 유치원·초중등학교, 중등이후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뿐만 아니라 주간보호 프로그램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 등과 같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도 적용된다(국가인권위원회, 2014).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이하 IDEA)은 주의 연방 기금 지원을 통하여 각 주의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지원을 위한 법률로 장애학생이 궁극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준비하고자 그 목적이 있으며, 모든 장애학생에게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의 이행을 명령하고 그 이행 보장을 위한 절차적 구제를 규정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4).

<표 4>는 장애학생 인권증진을 위한 학교 차원의 지원 사례이다.

<표 4> 인권교육 가이드북(국가인권위원회, 2014)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배우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의 책임에 대해 살펴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교육 소개, 인권교육의 본질적인 구성요소, 인권교육의 방법, 인권 교육의 계획,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평가와 관련 자료들로 구성됨 관련 내용들이 크게 7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상	모든 학생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아이디어, 활동 지도안 등의 실제적인 자료들이 제시되어 있음 온라인을 통해 매뉴얼 및 워크시트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
주관기관	미네소타 대학교(University of Minnesota)의 인권교육자료센터(Human Rights Resource Center)
출처	https://www.law.umn.edu/human-rights-center http://hrlibrary.umn.edu/edumat/pdf/hreh.pdf

Ⅲ. 모두를 위한 인권존중 및 장애인권 교육 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장애학생 인권지원의 국내외 사례들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지원을 위한 교육적 지원방안에 대한 시사점과 모두를 위한 인권존중 학교환경 조성 및 장애인권 교육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모두를 위한 인권존중 학교환경 조성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분위기 형성을 위한 환경 조성은 크게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환경 조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조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학교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특성과 현황을 일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나 익명게시판 등을 운영할 수 있고 이와 함께 학교의 곳곳에 인권존중과 관련된 학교의 가치와 규범을 알리는 내용을 게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상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이러한 정보와 안내에 노출시키고,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 및 침해사실을 표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학교 환경을 구비하는 것이다. 둘째,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에 장애학생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관리 감독 체계와 환경을 구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부모 지원단, 지역사회 자원봉사 인력, 사회복무요원 등을 활용할 수 있고, 학교전담경찰과 연계하여 상시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셋째, 감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환경을 정비한다. 학교의 감시가 소홀한 장소나 인권침해가 발생할만한 장소 곳곳에 위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도움요청벨’을 설치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요청벨의 사용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특히 장애학생에게는 도움요청벨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구분하여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충분히 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서 학교는 장애학생의 교육시설 이용과 이동 및 정보 접근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당한 편의 도구와 장비를 제공하지 않거나 활동공간의 편의시설 및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인권침해의 중요한 측면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2013)에서 제작한 ‘장애인편의시설매뉴얼: 교육연구시설편 학교’ 등이 지침의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학교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물리적 환경으로서 편의시설 제공에서 더 나아가 모든 학생들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환경을 이해하고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편의시설이

장애인 등의 이동 및 접근, 생활을 위해 부가적으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설비나 보조기기를 의미한다면,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이란 생활 전반에 이용 및 이동에 불편을 제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용하는 사람의 다양성에 초점을 두어 모두의 편의를 위하여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이 조성될 때 차별과 배제가 아닌 진정한 배려를 통한 인권존중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의 예(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2. 모두를 위한 인권존중 교육

모두를 위한 인권존중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 내 모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 전체적으로 구성된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우선, 모두가 존중받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것은 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모두 학생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학교 구성원 간의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학생들의 참여방식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합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 사용과 태도가 필요하다. 학생들로 하여금 무심코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대해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캠페인이나 개선활동 등을 학교 차원에서 실시함으로써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분리를 조장하거나 무리를 짓는 또래 문화가 아닌 함께하는 공동체를 조성하는 또래 문화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중시하는 방법을 알고, 갈등 발생 시 즉각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이나 학급의 규칙을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갈등을 해결하고 중재하는 교육을 진행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깨동무 프로그램’은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구사랑 동아리, 사제동행 프로그램, 체험형 예방활동,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한 교육활동, 언어·사이버 폭력 예방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볼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넷째, 학생들의 공감 능력과 소통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사회성과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교육과정 속에서 함께 연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인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교급별(초/중/고)로 학생들이 공감, 의사소통, 자기존중감, 감정조절, 갈등해결,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라는 6 가지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모듈 형태로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활동들을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활용해 볼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다섯째, 각 학급의 행동규칙이나 공모전이나 활동 등을 통해 인권의식을 주제로 한 포스터, 그림, 전시품들을 교실이나 복도 등에 전시하여 인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교육하는 것이다. 학교의 모든 학생이 존중되는 학교 분위기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권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보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장애에 대한 이해는 비장애 학생들로 하여금 장애 혹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장애인식개선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장애에 대한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들이 실제로 학생들로 하여금 의미있는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장애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일회적이며 이벤트성의 활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장애에 대해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태도를 형성하며, 실생활에서 실천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학교현장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단순히 장애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장애이해를 위한 교육을 할 때 시혜적인 태도를 드러내거나 무조건적인 배려나 수용을 강조하기보다 동등한 구성원으로써의 장애학생을 존중하는 내용과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실제로 장애이해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교수자료를 선택할 때 교수학습 자료에서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를 의료적 측면이나 개인적 측면으로 볼 경우, 치료적 측면이나 개인의 장애 극복이라는 요소에 치중하여 오히려 역기능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장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자연스런 일상의 학교생활 속에서 장애이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여 교육과정 내에 장애관련 요소들이 포함되도록 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범교과를 포함한 교과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 활동 등을 통하여 함께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통합교육 환경에서 장애로 인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나 갈등 상황들을 제시하고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활동이나 토론, 게임, 상황극이나 역할극, 캠페인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 볼 수 있다.

다섯째,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 하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활동 기회를 확대하도록 한다. 학급 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권 동아리,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 등을 확대함으로써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장애인 당사자 또는 장애인 가족과의 만남이나 강연 등을 통해 직접적인 접촉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관내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권 동아리 활동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고,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일반교사의 참여를 꾀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인권존중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장애인권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학교 문화가 조성됨에 따라 장애만을 위한 인권이 아닌 모두를 위한 인권이 존중되는 자연스러운 학교 환경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다양한 인권교육 및 장애에 관련된 인권교육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상호작용 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 사회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역 내 자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들이 구비된다고 하면 지역 내 안전적 사회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학생 인권지원의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특정 사례들을 중심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 환경 조성 및 장애인권 교육 방안에 대한 다양한 국내외 사례들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사하여 장애인권 관련 제도 및 정책들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8).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 교육부 보도자료(2018. 12. 18).
- 국가인권위원회 (2014).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통합교육 현장의 교육권 침해를 중심으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립특수교육원 (2014). 장애학생인권실태·인식 조사. 충남: 저자.
- 김양화, 김남순(2013). 특수교육대상자 학교폭력 실태 및 예방 방안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연구. 지적장애연구, 15(3), 173-200.
- 김요섭 (2015). 통합교육 현장의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 및 예방 방안. 특수교육, 14(3), 265-288.
- 손지영, 김향중 (2019). 통합교육 상황에서 장애학생 인권침해 및 인권지원에 대한 일반교사의 인식. 특수교육논총, 35(3), 1-25.
- 정명신, 이경준 (2012). 국내 장애인 인권관련 연구동향 분석과 제언. 한국위기관리논집, 8(5), 143-164.
- 한국교육개발원 (2013). 학교폭력 예방정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장애인편의시설매뉴얼: 교육연구시설편, 학교.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2018년 편의증진 민간교육자료집.